

의안번호	제 673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순묵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#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순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
발의자 : 임순목, 이광진, 강현삼,  
김봉희, 박병진, 장선배,  
윤은희

## 1. 제안이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신기술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(안 제6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 :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'17. 8. 14. ~ '17. 8. 20.(의회 홈페이지 게재)

##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도지사가</u>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삭제</p> <p>제6조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-.</p> <p>제6조(위원회 심의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건설기술 진흥법</u>」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<u>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한 사항</u></p> <p>4. <u>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[건설기술 진흥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5.18., 2015.7.24.>

1. ~ 5. (생략)

6. "발주청"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(發注)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

7. ~ 11. (생략)

제5조(건설기술심의위원회) ① 건설기술의 진흥·개발·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중앙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지방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,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며,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**제17조(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** (생략)

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<개정 2016.11.29>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·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~ ⑨ (생략)